

2. 거창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 및 제출자 : 2005. 11. 21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5. 11. 21

다. 의안번호 : 제2005 - 63호

라. 상정일자 : 2005. 12. 5

2. 폐지이유

○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을 위하여는 사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행자부(당시 내무부)의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, 2004.1.14 행자부의 승인권과 업무처리규정이 폐지됨으로써 조례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조례전체 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조례제정 목적을 보면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과 국제교류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써 국제화업무 추진을 위하여는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하여는 존치의 필요성도 있으나, 그 동안 조례규정에 의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없으며 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